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2.12.20

제출자 : 고응중의원의외 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1년 12월 23일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활 동 목 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-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
-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
-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
-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- 2000년 12월 23일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응중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, 김영해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12.23(월) (10:00)	제1차조례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견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견 3.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4.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.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6.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7.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	